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소상공인 지원

Q **요즘 뉴스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주 안내하던데, 소상공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A 소상공인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광업·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 광업·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상시 근로자의 기준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①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②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①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③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Q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역 상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네. 예비 창업자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 및 유동인구,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한 입지등급 등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이용안내-서비스 소개 참조].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구분	내용
간단분석	행정구역,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른 매출 분석, 업종 분석, 유동인구 분석 정보 등을 제공
상세분석	관심있는 위치와 업종에 따른 상권정보를 빅데이터에 기반한 리포트로 제공
상권지도	건물 주변 인구와 건물 내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 예정지를 추천
배달지도	선택된 시·군·구별 업종에 따른 배달 매출액 순위를 지도에 직관적으로 제공
배달현황	선택 위치 및 배달 업종을 기반으로 배달 인구별·연령대별·시간대별 매출 분석 정보 등을 제공
경영진단	내 가게 기준의 업종, 매출, 유동인구, 평균업력 등을 기반으로 내 가게 경영 진단 제공
역량진단	창업에 대한 세부지표를 설문 형식으로 진단하여 창업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
창업진단	경쟁 분석, 수입 분석, 업종 분석 등 다양한 업종별 분석 정보를 제공

■ 그 밖에 핫플레이스 분석, SNS 분석, 관광·축제 정보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종 정보도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365(https://bigdata.sbiz.or.kr)-이용안내-서비스 소개 참조].

Q 직원 3명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영상 어려움이 큰데, 매달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정부로부터 해당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 고용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2항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 산재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제2항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Ⅰ).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6등급	4,900,120	161,100
7등급	5,392,020	177,270
8등급	5,883,920	193,440
9등급	6,375,820	209,610
10등급	6,867,710	225,780
11등급	7,359,610	241,960
12등급	7,851,515	258,132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에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백년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었다면 백년소상공인 마크를 부착하여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 제조업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백년소상공인 마크

백년소공인 MASTER SMALL MANUFACTURER

백년가게 LONG-LASTING SMALL BUSINESS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 금융지원 사업

■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안한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건 없나요?

A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 제도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항 참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단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절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낼 것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제1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공제금의 지급

■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 또는 해산(법인만 해당)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으로 사업장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https://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 지역상권 정보, 상권정보시스템, 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백년소상공인,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창업, 소상공인 공제, 보험, 노란우산

KOR 법 제 처
www.moleg.go.kr